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카탈로그 및 책자를 제작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홍보대상은 서울지역 193개 공공기관이며, 책자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Good Software), 신제품(NEP) 등의 인증제품이 소개되어 있고 성능인증 관련 상세한 제품소개서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13종)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서울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게 되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의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종류 및 우선구매처리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전자 카탈로그 및 책자를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2-2110-6318)
		담당자	주무관	문수정 (02-2110-6323)



우선구매제도 개요

- **운영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

* 법적 근거 :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대상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기술개발제품 13종)

□ **운영절차**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기업의 공장소재지 기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 지방청이 기업을 대신해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60일 이내 구매내용 또는 미구매 사유를 통보받아 기업에 안내

< 우선구매 절차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구매목표비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설정 의무화

* 구매목표비율 연혁 : ('06) 5% 이상 권고 → ('09) 10% 이상 권고 → ('16) 10% 이상 의무 → ('20) 15% 이상 의무('21년 적용)